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보고서

2023. 3. 30.

행정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23년 3월 16일

나. 제출자: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2023년 3월 22일

라. 상정일자: 제24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2023. 3. 27.) 상정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행정국장 유옥준)

가.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정비하여 주민자치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주민자치회 위원 정원 규정 하한 삭제(안 제5조)

○ 위원 위촉 시 주민자치학교 사전 교육이수 규정 삭제(안 제7조~제8조)

○ 연임 시 보수교육 의무 이수규정 삭제(안 제9조)

○ 위원의 의무 중 분과위원회 참여 규정 삭제(안 제11조)

○ 주민자치회 회의 및 분과위원회 회의 규정 정비(안 제18조)

○ 자치계획에 관한 내용 중 분과별 사업계획 규정 삭제 (안 제22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김옥연)

#### ○ 본 개정조례안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5조(정원)는 주민자치회 위원 정원을 현행의 “3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에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변경하여 각 동별 상황에 따라 최소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하고자 정원의 하한 규정을 삭제함.
- 안 제7조(위원의 자격) 및 안 제8조(위원의 선정)는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 전 현행의 주민자치학교 교육과정 이수 의무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9조(위원의 임기 등)에서는위원의 연임 시 교육 이수 의무조항을 삭제한 것으로, 조례의 제정 당시 주민자치에 대한 이해도 및 참여율 제고 등을 이유로 주민자치 교육과정 이수를 의무화하였으나 오히려 진입장벽으로 작용해 참여 의지가 있는 주민은 누구나 공평한 절차를 통해 참여할 수 있도록 삭제한 것임.
- 안 제18조(회의)에서는 주민자치회 및 분과위원회의 정기회를 현행조례와 같이 월 1회로 하되, 주민자치회 의결로 개최 횟수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월 1회 이상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 분과위원장 회의 의무 조항을 삭제하여 주민자치회 운영에 있어서 동별 상황에 맞춰 자율성을 부여하고자 함.
- 안 제22조(자치계획의 구성)에서는 주민자치회가 자치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중 “분과별 사업계획” 항목을 삭제함. 이는 현재 분과별 사업을 시비 지원 없이 모두 구비로 충당하게 됨에 따라 예산 부족 등의 문제로 인해 모든 분과별 사업을 계획·시행하기 어려운 여건을 반영한 것임.

#### ○ 검토 결과

-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회의 운영에 있어서 동별 여건을 고려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 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자 한 조례안임. 다만, 현 조례에서 자치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분과별 사업 계획은 해당 분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목표와 방향성, 예산 등을 세부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를 기반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성과를 평가하게 되는 점을 감안할 때, 분과별 사업계획은 강제 조항으로 규정하거나 삭제하지 않고 동별 여건에 맞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4. 심사결과: 수정안 가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114 호
----------	---------

제출연월일: 2023. 3. .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정비하여 주민자치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주민자치회 위원 정원 규정 하한 삭제(안 제5조)
- 나. 위원 위촉 시 주민자치학교 사전 교육이수 규정 삭제(안 제7·8조)
- 다. 연임 시 보수교육 의무 이수규정 삭제(안 제9조)
- 라. 위원회의 의무 중 분과위원회 참여 규정 삭제(안 제11조)
- 마. 주민자치회 회의 및 분과위원회 회의 규정 정비(안 제18조)
- 바. 자치계획에 관한 규정 정비(안 제22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 다. 협의사항
  - 1) 규제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 2)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인권영향평가: 해당 없음
- 라. 입법예고(2023. 2. 2. ~ 2. 22./20일간) 결과: 의견 없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포함한 30명 이상”을 “포함한”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사람 가운데 주민의 자치 소양 강화를 위하여 운영하는 교육(이하 “주민자치학교”라 한다)을 6시간 이상 주민자치학교 이수한 사람이어야”를 “사람이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신청하고 주민자치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을 “신청한”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하며, 주민자치학교 또는 사전에 구청장이 인정한 보수교육을 임기 중에 6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를 “한다”로 한다.

제11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3호로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가목 단서 중 “격월 개최”를 각각 “개최 횟수를 달리 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22조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호(중전의 제6호) 중 “동 주민참여예산”을 “주민참여예산 공모”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정원)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 회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2명 이내의 주민자치회 부회장(이하 “자치부회장”이라 한다)을 <u>포함한 30명 이상 50명 이내의</u>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구청장은 인구수 또는 신청자수를 고려하여 위원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p> <p>제7조(위원의 자격) ① 위원은 모집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으로 다음 각 호의 <u>사람 가운데 주민의 자치 소양 강화를 위하여 운영하는 교육</u>(이하 “주민자치학교”라 한다)을 6시간 이상 <u>주민자치학교 이수한 사람</u>이어야 한다. <u>다만, 이수의 효력은 2년으로 한다.</u></p> <p>1. ~ 4. (생략)</p> <p>②·③ (생략)</p> <p>제8조(위원의 선정)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공개모집에 <u>신청하고 주민자치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u> 중 위원선정관리위원회에서 공개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다만, 위원의 구성은 「양성</p>	<p>제5조(정원) ① ----- ----- ----- ----- 포함 ----- ----- ----- ----- . ----- ----- .</p> <p>제7조(위원의 자격) ① ----- ----- ----- 사람이어야 ----- ----- ----- ----- ----- ----- . &lt;단서 삭제&gt;</p> <p>1. ~ 4.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p> <p>제8조(위원의 선정) ① ----- ----- 신청 ----- ----- ----- ----- ----- . -----</p>

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② ~ ⑥ 삭제

⑦ (생략)

제9조(위원의 임기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연임 시에는 공개추첨 없이 임기만료 3개월 전에 연임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학교 또는 사전에 구청장이 인정한 보수교육을 임기 중에 6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2. (생략)

3. 한 개 이상 분과위원회 참여 및 활동

4. (생략)

②·③ (생략)

제18조(회의) ① 회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주민자치회 회의

가. 정기회: 월 1회. 다만, 주민자치회 의결로 격월 개최할 수 있다.

나. (생략)

-----  
---

⑦ (현행과 같음)

제9조(위원의 임기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한다.

제11조(위원의 의무) ① -----  
-----.

1. 2. (현행과 같음)

<삭제>

3. (현행 제4호와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18조(회의) ① -----  
-----.

1. -----

가. -----  
----- 개최 횟수  
를 달리 정--.

나. (현행과 같음)

2. 분과위원회 회의

가. 정기회: 월 1회. 다만, 주민자치회 의결로 격월 개최할 수 있다.

나. (생략)

3. 분과위원장 회의: 월 1회 이상. 다만, 주민자치회 의결로 격월 개최할 수 있다.

② ~ ⑦ (생략)

제22조(자치계획의 구성) 자치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4. (생략)

5. 분과별 사업계획

6. 동 주민참여예산 사업계획

7. (생략)

2. -----

가. -----  
----- 개최 횟수를 달리 정-.  
-----

나. (현행과 같음)

<삭제>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22조(자치계획의 구성) -----  
-----  
-----.

1. ~ 4. (현행과 같음)

<삭제>

5. 주민참여예산 공모 -----

6. (현행 제7호와 같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제 호	관련 번호
----------	-----	----------

제안연월일: 2023. 3. 27.

제안자: 우경란 의원 외 1명

## 1. 수정이유

- 해당 조례안 일부개정 내용 중 주민자치회 분과위원회 참여 의무 규정은 위원들의 참여 제고를 위해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수정함.

## 2. 수정내용

- 안 제11조 제1항 제3호와 안 제18조 제1항 제3호를 현행대로 하고 “안 제11조 제1항 제3호”를 “안 제11조 제1항 제4호”로 수정함.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1조제1항을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안 제11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한 개 이상 분과위원회 참여 및 활동

안 제18조제1항에 제3호를 현행대로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분과위원장 회의: 월 1회 이상. 다만, 주민자치회 의결로 격월 개최할 수 있다.

### 수정안 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11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2. (생략)  <u>3. 한 개 이상 분과위원회 참여 및 활동</u> 4. (생략) ②·③ (생략)	제11조(위원의 의무) ① ----- -----. 1. 2. (현행과 같음)  <u>&lt;삭제&gt;</u>  3. (현행 제4호와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위원의 의무) ① ----- -----. 1. 2. (개정안과 같음)  <u>3. (현행과 같음)</u> 4. (현행과 같음) ②·③ (개정안과 같음)

제18조(회의) ① 회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운  
영한다.

1. 주민자치회 회의

가. 정기회: 월 1회.  
다만, 주민자치  
회 의결로 격월  
개최할 수 있다.

나. (생략)

2. 분과위원회 회의

가. 정기회: 월 1회.  
다만, 주민자치  
회 의결로 격월  
개최할 수 있다.

나. (생략)

3. 분과위원장 회의:

월 1회 이상. 다만,  
주민자치회 의결로  
격월 개최할 수 있다.

제18조(회의) ① -----  
-----  
-----.

1. -----

가. -----.  
-----  
----- 개최 횟  
수를 달리 정-.  
나. (현행과 같음)

2. -----

가. -----.  
-----  
----- 개최 횟  
수를 달리 정-.  
나. (현행과 같음)

<삭 제>

제18조(회의) ① -----  
-----  
-----.

1. -----

가. (개정안과 같음)

나. (개정안과 같음)

2. -----

가. (개정안과 같음)

나. (개정안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포함한 30명 이상”을 “포함한”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사람 가운데 주민의 자치 소양 강화를 위하여 운영하는 교육(이하 “주민자치학교”라 한다)을 6시간 이상 주민자치학교 이수한 사람이어야”를 “사람이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신청하고 주민자치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을 “신청한”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하며, 주민자치학교 또는 사전에 구청장이 인정한 보수교육을 임기 중에 6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를 “한다”로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가목 단서 중 “격월 개최”를 각각 “개최 횟수를 달리 정”으로 한다.

제22조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호(중전의 제6호) 중 “동 주민참여예산”을 “주민참여예산 공모”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정원)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 회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2명 이내의 주민자치회 부회장(이하 “자치부회장”이라 한다)을 <u>포함한 30명 이상 50명 이내</u>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구청장은 인구수 또는 신청자수를 고려하여 위원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p>	<p>제5조(정원) ① ----- ----- ----- ----- <u>포함한</u> ----- ----- ----- . ----- ----- .</p>
<p>제7조(위원의 자격) ① 위원은 모집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으로 다음 각 호의 <u>사람 가운데 주민의 자치 소양 강화를 위하여 운영하는 교육</u>(이하 “주민자치학교”라 한다)을 <u>6시간 이상 주민자치학교 이수한 사람</u>이어야 한다. 다만, 이수의 효력은 <u>2년으로 한다.</u></p> <p>1. ~ 4. (생략) ②·③ (생략)</p>	<p>제7조(위원의 자격) ① ----- ----- ----- <u>사람이어야</u> ----- ----- ----- ----- . &lt;단서 삭제&gt;</p> <p>1. ~ 4.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p>
<p>제8조(위원의 선정)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공개모집에 <u>신청하고 주민자치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u> 중 위원선정관리위원회에서 공개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다만, 위원의 구성은 「양성</p>	<p>제8조(위원의 선정) ① ----- ----- <u>신청한</u> ----- ----- ----- ----- . -----</p>

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 ② ~ ⑥ 삭제
- ⑦ (생략)
- ⑧ 삭제

제9조(위원의 임기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연임 시에는 공개추첨 없이 임기만료 3개월 전에 연임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학교 또는 사전에 구청장이 인정한 보수교육을 임기 중에 6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제18조(회의) ① 회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주민자치회 회의
  - 가. 정기회: 월 1회. 다만, 주민자치회 의결로 격월 개최할 수 있다.
  - 나. (생략)
2. 분과위원회 회의
  - 가. 정기회: 월 1회. 다만, 주민자치회 의결로 격월 개최할 수 있다.
  - 나. (생략)
3. 분과위원장 회의: 월 1회 이

-----  
---

- ② ~ ⑥ (현행과 같음)
- ⑦ (현행과 같음)
- ⑧ (현행과 같음)

제9조(위원의 임기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한다.

제18조(회의) ① -----  
-----.

1. -----
  - 가. -----  
----- 개최 횟수  
를 달리 정-.  
나. (현행과 같음)
2. -----
  - 가. -----  
----- 개최 횟  
수를 달리 정-.  
나.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상. 다만, 주민자치회 의결로  
격월 개최할 수 있다.

② ~ ⑦ (생략)

제22조(자치계획의 구성) 자치계  
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 4. (생략)

5. 분과별 사업계획

6. 동 주민참여예산 사업계획

7. (생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22조(자치계획의 구성) -----

1. ~ 4. (현행과 같음)

<삭제>

5. 주민참여예산 공모 -----

6. (현행 제7호와 같음)